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8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0. 16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- 존속기한 : 2024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(5년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3. 8. 25. ~ 9. 14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따로 붙임(※ 미첨부 사유서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2023년”을 “2028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”를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4항에 따라 <u>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</u> ----- --. 다만,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</u>」에 따른 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비용 발생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8조(준속기한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
(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)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.
※ 단순 일몰조항 기한 연장 및 명칭 정비

4. 작성자 : 생활보장과 주거의료복지팀장 김준성